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철성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452 |
|----------|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2일

발 의 자: 박철성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김성준, 김영철,
김용일, 김원태, 김지향,
김형재, 남창진, 민병주,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
박영한, 소영철, 송재혁,
아이수루, 유만희, 유정인,
, 유정희, 윤종복, 이상욱,
이영실, 이용균, 이종태,
임규호, 임종국, 정준호,
최민규, 최재란, 한·신,
홍국표, 황유정 의원(32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
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에 저소득층의
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
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
지원을 추가함. 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5조(생활안정지원의 내용)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.</p> <p>1. ~ 10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11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| <p>제5조(생활안정지원의 내용) ① 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1.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</u></p> <p><u>12. (현행 제11호와 같음)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문서번호

2022111000000002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박철성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정수 팀장
선동규 분석관

접수일 : 2022.11.10.

회신일 : 2022.11.14.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‘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’ 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(제3조제1항2호)

-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제11호 신설 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담당 부서 확인 결과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, 지원하기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규모 그리고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 비용 추계가 어려움

◆ (참고) ‘이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 관련’ 2023년 신규 사업 ◆ (단위 : 천원)

| 세부사업명 | 세부내역 | 예산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| 4,644,000 |
|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|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| 2,000,000 |
|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(국비매칭사업) | 이주 지원(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) | 2,644,000 |

※ 2023년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예산(안) 참조
 ※ 지원대상 소득기준 :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(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,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(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~70% 이하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 담 당 관 조도형
 추계세제팀장 이정수
 주 무 관 선동규
 ☎ 02-2180-7953
 e-mail : abasiclife@seoul.go.kr